

2026년 1분기

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(단위: 천 원)

연번	예비비 사용건	소관부서	사용액
계			34,246,360
1	‘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’ 예비비 사용	도로계획과	34,111,046
2	‘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’ 예비비 사용 (공사 연장(134일)에 투입된 간접비 청구)	도로계획과	135,314

□ '26.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2건, 34,246,360천원

○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: 부당이득금 34,111,046천원 집행

< 소송개요 >

- 사 건 명 :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0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
- 당 사 자 : (원고) 케이비부동산신탁, (주)하림산업 / (피고) 서울특별시
- 사건토지 : 서초구 양재동 225 외 5필지(8,675.25㎡)
- 청구원인 : 원고는 사건토지 소유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
- 판결결과 : 서울시 일부패소('26.1.22.)
- 판결내용 : 과거 사용승낙을 받아 도로 공용개시 행위를 한 것은 적법하나, 무상 사용 승낙 등이 실효되어 부지 점유사용권원 소멸, 현재 현황은 '도로'이나 도로 편입 당시 '대지'일 경우 '대지' 기준으로 부당이득 산정

- 사건토지는 2009년 “양재파이시티 신축사업”의 실시계획인가 시 종전소유자(파이시티)로부터 도로부지로 기부채납 확약을 받고, 사용승낙을 받아 2013년 공사완료 및 추모공원 진입로 등으로 사용 중이었으나,
- 2014년 파이시티가 파산 결정되었고, 2016년 (주)하림이 소유권 취득 후 신탁사(케이비부동산신탁)를 통해 2021.3월 우리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함
- 1심 원고 일부승소, 2심 서울시 전부승소, 3심 파기환송, 2심(파기환송심) 원고 일부승소에 따라 재상고심(3심) 진행 중으로 판결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(연12%) 등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34,111백만원을 원고에게 신속히 지급함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계			34,111,046,170	
도로계획과	부당이득금 반환청구	배상금 등 (305)	34,111,046,170	'26. 2. 6.

○ 간접비 지급 민사조정 소송 :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35,314천원 집행

< 소송개요 >

- 사 건 명 : 2025며48949 관리비
- 당 사 자 : (신청인)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 / (피신청인) 서울특별시
- 사건공사 :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('21. 9. ~ '27. 12.) ※공사중지상태
- 청구원인 : 연장된 공사기간 연장(315일)에 발생한 간접비 청구 건
- 조정결과 :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(강제조정)
- 결정내용 : 공사 연장 기간 315일 중 181일은 시공사가 간접비 포기 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181일을 제외한 134일에 대한 간접비 135,314천원을 지급

- 신청인은 서울시의 동작구 “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” 1차수 공사계약이 2회 연장됨에 따라 추가 발생한 간접비가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 중지로 지급되고 있지 않아 간접비 채권 소멸(2025.12.28.) 전 민사조정을 신청함.
- 신청인이 민사조정 신청시 공사 연장기간 315일에 대한 329,010천원을 요구 하였으나, 민사조정결과 시공사가 1회분 공사연장기간 181일에 대한 간접비 포기 각서를 제출한 점이 반영되어 134일에 대한 간접비인 135,314천원으로 41.1%으로 감액 조정되었음.
- 소송 진행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시공사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제소를 포기함
- 민사조정 결과에 따라 우리 시(市)가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간접비 (135,314천원)을 2026년 3월 13일에 지급하였음.

(단위: 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	계		135,314,000	
도로계획과	부당이득금 반환청구	배상금 등 (305-01)	135,314,000	'26. 3. 13.